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필기 4과목 건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1차 정오표[2016.5.10.]

(발행 2016年 3月 28日 : 4차개정 2쇄 발행)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빨간색 글씨-수정된 부분)																																																																			
143페이지 ④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3페이지 [남부지역] ²⁾	(단위 : mm) <table border="1" data-bbox="528 584 1422 1099">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건축물의 부위</th> <th rowspan="2">단열재의 등급</th> <th colspan="4">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th> </tr> <tr> <th>가</th> <th>나</th> <th>다</th> <th>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거실의 외벽</td> <td>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90</td> <td>110</td> <td>125</td> <td>135</td> </tr> <tr> <td>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r> <tr> <td rowspan="4">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td> <td rowspan="2">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바닥난방인 경우</td> <td>115</td> <td>135</td> <td>155</td> <td>170</td> </tr> <tr> <td>바닥난방이 아닌 경우</td> <td>95</td> <td>115</td> <td>130</td> <td>145</td> </tr> <tr> <td rowspan="2">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바닥난방인 경우</td> <td>80</td> <td>90</td> <td>105</td> <td>115</td> </tr> <tr> <td>바닥난방이 아닌 경우</td> <td>60</td> <td>70</td> <td>85</td> <td>90</td> </tr> <tr> <td rowspan="2">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td> <td>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145</td> <td>175</td> <td>200</td> <td>220</td> </tr> <tr> <td>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100</td> <td>120</td> <td>135</td> <td>150</td> </tr> <tr> <td colspan="3">바닥난방인 층간바닥</td> <td>30</td> <td>35</td> <td>45</td> <td>50</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0페이지 ④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8페이지 예제문제 16번	③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가 제출한 인증신청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이 다른 경우 서류가접수된날로부터 50일 이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2페이지 5번 요점 재인증 및 재평가	1. 재평가 요청 및 절차 → 삭제																																																																			
100페이지	10 인증기관감독 등																																																																			
120페이지 3번 문제	① “인증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인증규칙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인증신청, 수수료 납부, 접수, 평가, 인증서 발급, 민원처리, 인증통계, 민원관리, 인증기관관리 등 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빨간색 글씨-수정된 부분)
120페이지 5번 문제	()라 함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157페이지 예제문제 01번	“기밀성 창” , “기밀성 문” 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 ~ 5등급(통기량 5m ³ / h·m ² 미만)인 것을 말한다.
166페이지 예제문제 03번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265페이지 예제문제 06번	남부지역에서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값은 얼마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단위 : w/m ² · k)
284페이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6. 7 1 시행 예정) → 삭제
290페이지 예제문제 03번 해설	㉔의 경우에 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외의 경우에 1.800 w/m ² · k 이하가 되어야 한다.
328페이지 예제문제 05번 문제	남부지역에서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값은 얼마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단위 : w/m ² · k) (단, 공동주택 외 인 경우) → 삭제
328페이지 예제문제 05번 해설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이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적용하므로 0.340 이하를 적용한다.
341페이지 - <표3> ex2)	= 0.73 - {(0.73-0.61)/0.2 * (0.385- 0.2)} = 0.619
341페이지 예제문제 09번	① ㉔총열관류저항이 0.2 ㉔ 10% ③ ㉔총열관류저항이 0.4 ㉔ 20%
363페이지 예제문제 11번	④ 너비 1.5미터 이하의 출입문
404페이지 예제문제 15번 해설	• 전체 환기설비외기(OA) 도입풍량(CMH)의 60% 이상 적용시 기본배점을 부여한다.
433페이지 전기설비부문의 의무사항 ④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619페이지 1번 해설 ①	여러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 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 할 수 있다.